

핵연료주기시설과 연구용원자로의 심·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view and Inspection System for Fuel  
Cycle Facilities and Research Reactors

김한철, 신철, 김효중, 노승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

요약

국내 핵연료주기시설과 연구용원자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검사업무 관련 법령의 실제 적용시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조사하였다. 특히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사업허가기준, 허가변경 절차, 검사형태, 검사 합격기준, 검사시기, 해체 등에 관한 법령을 규제측면에서 이행한 경험을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법령 및 이행체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추가의정서와 국내법령과의 비교검토  
Comparis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with the Atomic Energy Act and  
Related Regulations

민 경식, 김 경진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150 번지

요약

정부는 IAEA 안전조치 강화방안인 추가 의정서를 올 연말까지 발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추가의정서의 실질적인 이행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추가의정서의 발효 이전에 추가의정서 이행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 중의 하나가 관련법령의 정비일 것이다. 원자력법과 대통령령은 이미 2001년에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추가의정서의 실질적인 이행에 필요한 장관고시는 과기부 및 관련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추가의정서와 검토 중인 장관고시안과 비교하여볼 때 전체적으로는 추가의정서의 이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추가의정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서 사소한 몇 가지가 고쳐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시안이 관련기관의 검토를 위한 회람시 수정되기를 기대한다.